



제429회국회(정기회)
제8차 국방위원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군인복무기본정책에 인권정책 및 기본권교육 관련
사항을 포함 등〉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263호)

2025. 11.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군인복무기본정책에 인권정책 및 기본권교육 관련 사항을 포함	3
2. 기본권교육을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실시	6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민형배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5. 9. 25.
3. 회부연월일 : 2025. 9.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의 인권정책과 기본권교육을 군인복무기본정책에 포함하고, 대면 교육을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군인의 권리와 인권 보호를 위해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5년간(2020~2024년) 위력행사, 직권남용 등 군 내 가혹행위가 436건 발생했으며, 이 중 174건은 불기소 처분되었습니다. 이 같은 현실은 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특히, 인권정책과 기본권교육에 관한 사항이 훈령에 위임되어 있어 강제력이 부족한 것이 문제입니다. 현재 제도는 권고적 성격에 그치고 있으며, 실질적 권리 보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군인 인권보호정책과 기본권교육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기본권교육을 반드시 대면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하려 합니다. 군인의 권리구제 실효성을 강화하고, 법의 실효성을 높여 군인의 기본권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한 목적입니다(안 제7조제2항제4호·제5호 신설 및

제38조제1항).

Ⅲ. 검토의견

1. 군인복무기본정책에 인권정책 및 기본권교육 관련 사항을 포함

- ☐ 개정안은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 「군인복무기본정책」에 ‘인권 정책 및 기본권교육에 관한 사항’과 ‘군인의 권리구제 실효성 강화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것임(안 제7조).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군인복무기본정책) ① (생략)	제7조(군인복무기본정책)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정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신설>	4. <u>군인의 인권정책 및 제38조에 따른 기본권교육에 관한 사항</u>
<신설>	5. <u>군인의 권리구제 실효성 강화에 관한 사항</u>
4. (생략)	6. (현행 제4호와 같음)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 ☐ 군인복무기본정책은 국가방위와 국민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 및 증진하고, 군인의 의무준수 확립 및 권리구

제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을 위해 2017년 12월부터 수립된 기본정책¹⁾으로, 군인의 복무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²⁾.

□ 개정안은 최근 5년간(2020~2024년) 위력행사, 직권남용 등 군내 가혹행위가 436건 발생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됨에 따라, 군인의 인권보호 및 권리구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내용을 군인복무기본정책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려는 것임.

□ 한편, 현행 군인복무기본정책인 「’23~’27 군인복무기본정책」에는 이미 군인의 인권보호 및 권리구제 실효성 강화를 위한 4개 대과제와 그에 따른 중점 추진과제들이 포함되어 있음.

[2025년 군인복무기본정책 시행계획 추진과제]

(’23~’27 군인복무기본정책 대과제)	중점 추진과제
1) 군인 기본권 보장 지평 확대	① 청년 장병의 눈높이에 맞는 생활여건 구축
	② 국가에 대한 헌신에 보답하는 보상체계 확립
	③ 장병 휴식권 보장을 위한 휴가·외출제도 개선

1) 2015년 12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5년 주기로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서임

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7조(군인복무기본정책)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복무기본정책(이하 “기본정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정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2. 연도별·과제별 추진계획
3. 재원(財源) 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인의 복무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④ 장병의 생애 설계를 고려한 맞춤형 취업·자기개발 지원
	⑤ 공백없는 군 의료체계 구축으로 건강권 보장
	⑥ 여가생활 여건 보장
2) 군인의무 준수 체계 확립	① 올바르게 군건한 국가관, 대적관 등 체화
	② 불합리한 관행, 부조리, 사적지시 근절
	③ 엄정한 기강 확립 및 사고 예방 활동 강화
3) 고충해소와 권리구제의 실효성 강화	① 장병의 복무 적응을 위한 심리치유 역량 강화
	② 공백없는 대내·외 인권침해 구제절차 확립
	③ 공정한 군 사법제도 운영을 위한 민·군 협력관계 강화
4) 양성 평등한 조직기반 강화	① 국방 양성평등 정책의 발전
	② 일·가정 양립의 근무환경 조성
	③ 현장 중심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활동 및 피해자 보호 지원
	④ 신속하고 엄정한 사건처리 시스템 활성화

*자료: 국방부

□ 인권정책, 기본권교육, 권리구제 실효성 강화와 같은 요소들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군인복무기본정책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필수 사항으로,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임.

□ 국방부 역시 해당 사항들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군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타당하므로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2. 기본권교육을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실시

- 개정안은 군인에 대한 기본권교육을 원칙적으로 대면 방식으로 실시하되, 감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 38조).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8조(기본권교육 등) ① 국방부장관은 「대한민국헌법」과 이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군인의 기본권과 의무 및 기본권 침해시 구제절차 등에 관한 교육(이하 “기본권교육”이라 한다)을 <u>매년 4회 이상</u> 실시하여야 한다. <u><단서 신설></u>	제38조(기본권교육 등) ① ----- ----- ----- ----- ----- <u>대면(對面)에</u> <u>의한 방법으로 매년</u> ----- ----- <u>. 다만, 국방부장관은</u> <u>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의 사유</u> <u>로 대면에 의한 기본권교육이 어렵</u> <u>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대면 방</u> <u>식을 통한 기본권교육을 할 수 있</u> <u>다.</u>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 현행법은 기본권교육을 매년 4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기본권교육의 대상, 내용, 시간 및 방법 등을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³⁾.

□ 이에 따라 「군 인권업무 훈령」에서는 부대 인권교육(병·간부)을 분기 1회·1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간부의 경우에는 사이버 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있음⁴⁾.

최근 5년간 군 인권교육 수강 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명)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부대 인권교육(대면)	768,389	818,790	771,851	807,578	755,162
인권교관 양성교육(대면)	98	580	599	545	596
인권업무종사자 인권교육(대면)	22	239	313	523	310
사이버 인권교육(비대면)	35,822	61,036	72,543	101,280	128,386

*자료: 국방부

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4조(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의 운영)

④ 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의 구체적인 대상, 내용, 시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4) 「군 인권업무 훈령」

제21조(교육시기 및 시간) ① 병 인권교육은 복무단계와 계급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훈련병 인권교육(교육기관) : 각 군 훈련병 교육기간(육군 신교대 포함) 중 1시간 이상
 2. 전입신병 인권교육(부대) : 부대 전입 후 2개월 이내에 1시간 이상
 3. 병 분대장 등 인권교육(교육기관) : 병 분대장 등 양성과정 교육기간(육군 신교대 포함) 중 1시간 이상
 4. 그 밖의 병 인권교육(부대) : 분기 1회 1시간 이상
- ② 간부 인권교육은 인권교육시간을 분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③ 부대(기관) 여건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분기별로 인권교육의 실시횟수와 시간을 조절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단, 분기별로 최소 1회 이상 교육하고 1시간 이상 누적시간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26조(교육대상) ① 사이버 인권교육의 대상은 간부, 군무원 및 국방부 공무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대상자는 해당 계급 또는 직급에서 사이버 인권교육 1개 과정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단, 제19조에 따라 인권교관으로 임명된 자는 사이버 인권교육 전 과정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 한편, 최근 5년간(2020~2024년) 위력행사, 직권남용 등 군 내 가혹행위가 436건 발생한 바 있으며, 이러한 인권침해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군 내 인권정책과 기본권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보임. 특히 기본권교육을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형식적 교육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실효성 있는 교육 여건과 운영 방식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임.

□ 개정안은 이러한 취지에서 군인의 기본권과 의무 및 기본권 침해시 구제절차 등에 관한 교육(기본권교육)을 원칙적으로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실시(안 제38조제1항)하되,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안 제38조제1항 단서)하려는 것임.

□ 다만, 군 특성상 각 군 부대별 특성에 따라 직무 여건상 대면교육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⁵⁾가 있으며, 전시·사변 등으로 교육훈련이 어려운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예외적 상황까지 모두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비대면교육을 예외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기보다는, 교육 진행 방식은 행정 운영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하위법령 등에서 보다 탄력적으로 규율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보임.

5) GP·GOP, 도서지역, 함정·잠수함 근무자, 지휘통제실 교대근무자 등

- ☐ 국방부는 기본권교육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대면교육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부대별 여건을 고려하여 대면·비대면 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10